

결 정

- 2018 - 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주 문

한국경제 2017년 12월 4일자 T10 「명품의 향기/여성복 브랜드 로샤스」·T11면 「명품의 향기/에르메스폴스미스」, 12월 26일자 T10 「명품의 향기/이탈리아 명품 남성복 ‘까날리」·T11면 「호텔의 향기/롯데호텔 ‘L7강남」 특집면, **매일경제** 12월 11일자 B8면 「여행+/셀러브리티 크루즈」, 12월 26일자 B8면 「여행+/시아홀리데이+젠팅드림크루즈」 특집 면, **서울경제** 12월 11일자 B5면 「베스트컬렉션」·B9면 「사계절 내내 쓰는 ‘삼성 김치플러스」 특집면, **아시아경제** 12월 19일자 26면 「제약 선물 꾸러미」 특집면, **파이낸셜뉴스** 12월 21일자 20~23면 「fn 뉴트렌드리딩」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호텔, 크루즈, 전자제품,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